

第45回 - 第8次

| | |
|-------|--------------|
| 의안번호 | 제 57 호 |
| 의결년월일 | 1995. 12. 5. |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2. 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3일 논산군수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3일
다. 상정일자 : 1995년 12월 5일 제45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박무부)

가. 제안이유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급증과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는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경영의 합리화와 지속적인 사업투자, 물을 아껴쓰는 풍토조성 및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려 함.

나. 주요골자

-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변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요금을 평균 16.3% 인상하도록 함.
- 상수도 업종별 구분등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하여 업종을 단일화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그간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운영을 충당하기 위하여

'94년 — 4억 원

'95년 — 5억 3천

'96년 — 5억 6천 6백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상수도요금 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특별회계의 적자누증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임.

- 또한 군내 상수도 사용가구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의 시가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읍의 변두리 지역이나 나머지 면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와 같이 막대한 군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 특별회계 독립채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수의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어 그동안 정부차원의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1999년까지 향후 5개년간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되도록 년차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요금조정의 근거가 되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에 있어 수용가의 34%에 해당되는 월평균 10톤이하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11톤이상 사용가에 대하여는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적용하여 수용가의 절수를 유도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